

『2024년 청년 창업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 창업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8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 대상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 지원기간** : 2024. 6월 ~ 9월
 - (참여기업 모집기간) 2024. 5. 8.(수) ~ 2024. 5. 21.(화) 17:00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84년 5월 8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장소재지(본점)가 인천광역시인 창업 후 3년 이내('21년 5월 8일 이후)인 기술기반의 청년 창업기업
- 선정규모** : 6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화자금(기업별 1,000만원) 지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및 연계 지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84년 5월 8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장 소재지(본점)가 인천광역시인 창업 후 3년 이내('21년 5월 8일 이후) 창업기업
 - 창업기업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용
 -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일 경우, 모두 청년에 해당 하여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청년 창업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5. 8.(화) ~ 5. 21.(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bit.ly/4dn227i>)
 - * 접수는 마감일(5.21.) 17:00까지 제출 완료 된 건에 대하여 유효함
 - ** 접수완료 후 보완 및 변경 불가능하며,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양식)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양식)
- ③ 확약서(신청양식)
-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⑤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구분	목 록	
공동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만 39세 이하 청년 자격 요건 확인용(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 별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②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②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 사업자등록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공고일 기준(24.5.8.)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실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24.5.8.)** 발급본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 및 환수됨
-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없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3

지원사항 및 기간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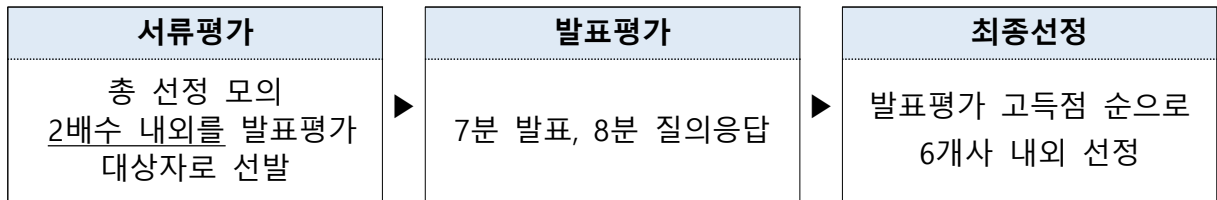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기업별 사업화 자금(1,000만원)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 연계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자금	-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금의 70%(700만원) 이상 마케팅비 로 필수 사용 - 사업화자금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9. 30.		
	지원항목	지원내용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제작하는데 지급하는 비용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무형자산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마케팅비 (70% 이상)	- 제품 및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앱(웹), 홍보동영상 등
		디자인	카탈로그(전자, 종이), 포장·제품 디자인, 브랜드(CI/BI) 개발 등
광고홍보		TV·라디오 광고, 신문·전문지홍보, 온라인홍보 등	
	전시참가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부스)	
후속연계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등록 - 교육, 멘토링 등 센터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우수 창업기업에 한하여 투자검토		

□ 평가방법

- (선정규모) 총 6개사 내외
- (평가절차)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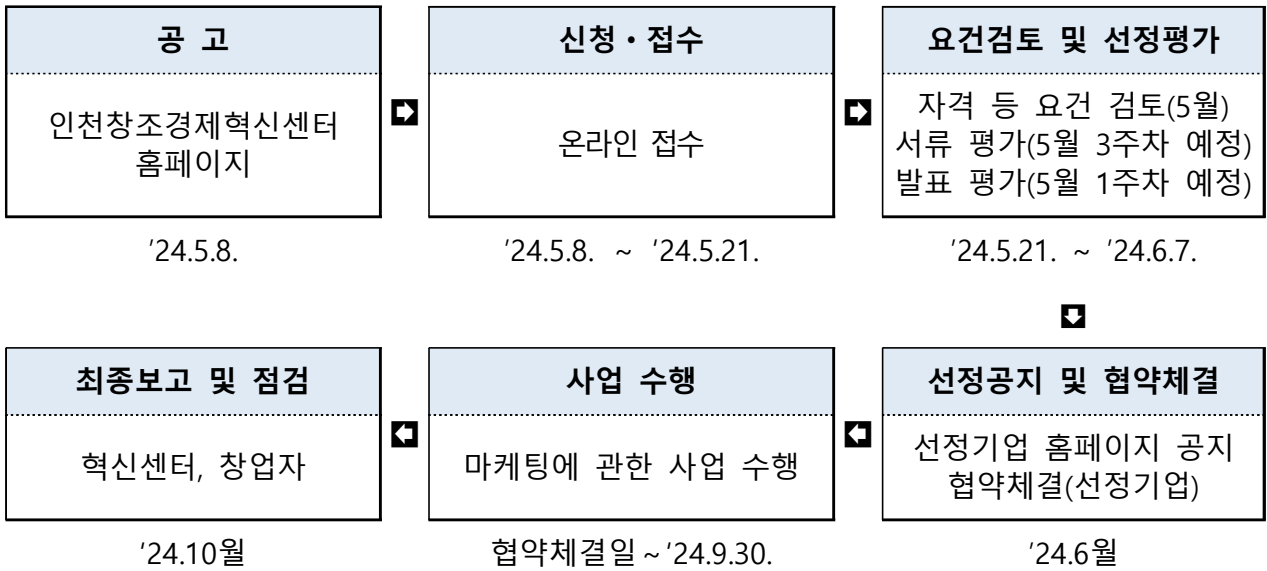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및 목적, 마케팅 진행 현황, 사업화 전략, 성장전략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평가
 - *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 (평가지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창업아이템 용도 및 특징, 마케팅 진행 현황
실현가능성	- 창업아이템 시장 분석 및 경쟁력(차별성), 마케팅 필요성 및 전략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마케팅 목표 및 활용계획, 예상성과 및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추진일정
기업구성	- 대표자 및 기업의 보유역량, 외부 협력 현황 및 활용 방안

□ 사업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함
 -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컨설팅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시 기 집행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센터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문의처

문의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팀 담당자 032-458-5031 / sclee@ccei.kr